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가단10279 판결 [사해행위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민
담당변호사 박남식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안준영
변 론 종 결 2022. 8. 12.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9.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3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D의 물리적 보안시스템 공사 중 CCTV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였고, C은 2016. 5. 4. 공사대금일체인 금 30,250,000원을 2016. 5. 12.까지 지급하겠다는 1차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6. 5. 19.에는 2016. 5. 31.까지 이를 지급하겠다는 2차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6. 7. 18.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17425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중인 2017. 3. 13. “C은 원고에게 2017. 3. 31.부터 2017. 11. 30.까지 매월 말일 130만원(다만, 2017. 8. 31.은 1,000만 원, 2017. 11. 30.은 90만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의무의 이행을 합계 260만 원 이상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고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그러나 C은 위 조정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7. 6.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2. 2. 1. 현재 3,400만 원(원금 2,000만 원 + 지연손해금 1,400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하고 있다.

라. C은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6. 9. 20. 자신의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그 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E은행의 근저당권이 2019. 10. 11.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주요 내용

원고가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지분 취득 사실 및 C의 사해의사를 2020. 9. 12. 이전에 알고 있었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법무사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소명자료로 첨부할 조정조서 정본을 2020. 5. 4. 발급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은 그보다 앞선 2020. 2. 20. 발급받았으며, 위 부동산 관련 토지대장은 2020. 8. 28. 발급받은 사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경우 원고의 법무사가 2020. 2. 20.에 발급받은 사실, 원고의 의뢰에 따라 법무사는 위 서류들을 소명자료 첨부하여 2020.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20. 8. 28.경에는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로부터 의뢰를 받은 법무사가 2020. 9. 18.에야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늦어도 위 2020. 8. 28.에는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9. 13.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층 16.88㎡

2층 160.73㎡

3층 160.73㎡

4층 160.73㎡

5층 160.73㎡

옥탑1층 17.94㎡ (연면적제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48.8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 407㎡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407분의 34.532

- 이 상 -

